

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5-353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 . 6 . .
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유사·중복기금(노인복지기금, 장애인복지기금, 여성발전기금)을 통합한 「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제정하고,
- 이와 관련하여 「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」 중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중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37조)
- 나. 여성발전위원회기능중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38조)
- 다.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조정(안 제39조)
- 라.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41조부터 안 제50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7조(여성발전위원회)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 등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, 동두천시여성상(이하“여성상”이라 한다)수상자를 심사·선정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여성발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38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주민생활지원실장, 사회복지업 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, 여성정책에 관하여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제41조 부터 제50조를 모두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사회복지과
입 안 자	실 · 과장 직위 · 성명	사회복지과장 김 재 두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여성보육담당 윤 영 순
	담 당 자 성명 · 전화	한 은 주 860-2263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7조(여성발전위원회)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등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, “동두천시 여성발전기금”(이하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관리·운용에 대한 사항의 심의와 “동두천시여성상”(이하“여성상”이라 한다)수상자를 심사·선정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여성발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	제37조(여성발전위원회)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등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, 동두천시여성상(이하“여성상”이라 한다)수상자를 심사·선정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여성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제38조(기능) ① (생략) 1. ~ 4. (생략)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.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.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.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5.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6. 그 밖의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~ ④ (생략)	제38조(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<삭제> ③ ~ ④ (현행과 같음)
제39조(구성) ① ~ ② (생략)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주민생활지원실장,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, 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기금 운영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 이어야 한다.	제39조(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주민생활지원실장, 사회복지업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, 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현행	개정안
④ (생략) 제41조(기금의 설치) ①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단체의 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·운영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·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. 제4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시의 출연금 2. 기금의 운용수익금 3. 그 밖의 수입금 제4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관련 사업에 사용한다. 1.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.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.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4.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5. 영·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6.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7. 건강가정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지원 8.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.	④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

현행	개정안
② 기금은 「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 ③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. ④ 기금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 제45조(기금관리 심의) 기금의 관리·운용에 대해서는 제37조에서 정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. 제46조(기금관리 공무원)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. 1. 기금운용관 : 사회복지과장 2. 기금출납원 : 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 제47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 2.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.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.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	<삭 제> <삭 제> <삭 제>

현행	개정안
<u>제48조(지원의 중지 및 회수) 시장은 기금 의원 활한 운용을 위하여 기금이 지원목적 외에 사용 되거나 허위·부정한 방법과 그 밖의 사유로 인 하여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.</u> <u>제49조(결산보고)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47조 규정에 의한 기 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각각 세입·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.</u> <u>제5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무는 「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 용한다.</u>	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